

의안번호	2212356
의 퇴 인	한준호의원
회 답 일	2025.11.07.
추계번호	25B4545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의2 신설 (긴급 재난 관련 정보 제공)	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철도서비스 이용자가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인 안내표시, 음성 안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제1항에 따른 긴급 재난 관련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32조의2 신설 (긴급 재난 관련 정보 제공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철도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철도서비스 이용자가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인 안내표시, 음성 안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이와 관련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시스템 개선, 장비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재 긴급 재난 시 시각적인 안내표시, 음성 안내 시스템이 운영 중([참고 자료])이나,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시스템은 역과 열차 내 안내시스템이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일괄제어가 가능한 ‘영상매체시스템’ 구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, 이에 따라 현행 설비의 기능개선이나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이처럼 개정안의 시행으로 현행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초과하는 수준의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개정안에서 긴급 재난 관련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,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이 현시점에 불확정적이므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철도역 및 열차 내 긴급 재난 방송 공급 현황

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(2025.9)

□ (역사) 시각안내표지

- (처리정보) 여객자동안내 장치로 지연시간 및 안내메세지를 송출
- (설치현황) 183개역, 2,793대(여객분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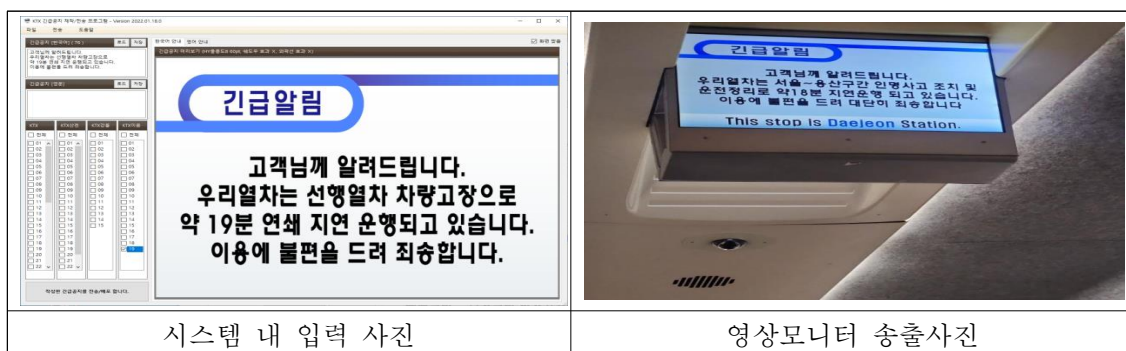
맞이방 내 여객자동 안내장치(대형)

승강장 내 여객자동 안내장치(소형)

□ (역사) 음성 안내시스템

- (처리정보) 역사 내 방송시스템* 및 원격방송**을 통하여 이례사항 시 지연시간, 안내 메시지 등 송출
 - * 방송시스템(KSBS): 5분 이상 지연 시 안내방송 자동 송출
 - ** 관제원격방송: 관제센터 및 본사에서 중앙 원격방송 송출
- (설치현황) 여객 분야 234개역
 - KBS, SBS방송은 여객 미취급 시 연결 해제

□ (고속열차) 정보제공 시스템



시스템 내 입력 사진

영상모니터 송출사진